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3 년 4 월

• 예규·판례

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후 약 6 년이 지난 시점에 서야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청구법인 이사들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 13 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에 의하여 급조되었다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 44 조 제 4 항 제 1 호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하겠음 (조심 2022 서 0036, 2023.04.06)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1996 년경 설립되어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연차등록, 출원유지료 위탁관리, 상표갱신등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및 사내이사 BBB(대표이사 AAA 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법인 이사들”이라 한다)은 2020 년 6 월경 특허서비스업을 영위하는 000 법인 000 의 한국지사인 000(이하 “인수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각 제의를 받았고, 2020.11.23. 인수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종업원 전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여 청구법인 이사들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000 원에 매각함
- 한편,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2020.11.5. 청구법인 이사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창업한 이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규정 제 13 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법인은 AAA 과 관련하여 ① 퇴직위로금 000 원 중 000 원과 ② 중간 정산 이전 퇴직금 중 지급하지 않은 000 원 합계 000 원을, BBB 과 관련하여 ① 퇴직위로금 000 원 중 000 원과 ② 퇴직금 000 원 합계 000 원 (총 합계 000 원,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퇴직급여로 신고하고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000 원을 납부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2.4. 000 서장에게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퇴직소득세 000 원을 이연 퇴직소득으로 보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규정을 무시하고 지급한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7.5. 청구법인에게 2021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1.9.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로 확정된 2021 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 원을 결정·고지하고, 2022.2.9. 2020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000 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및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취소)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퇴직금은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4.12.19.)과 정관(2014.12.19.) 및 이사회 회의록(2020.11.5.)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2014.12.19. 개최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되었고,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2020.11.5.에서야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청구법인 이사들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 13 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에 의하여 급조되었다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 44 조 제 4 항 제 1 호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하는 점
- ✓ 청구법인의 정관 제 45 조 제 3 항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 13 조 제 1 호는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 항은 그 금액과 이를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 인 계산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각각의 계산근거에 따라 별개의 항목으로 산정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합계인 쟁점퇴직금은 「법인세법」제 26 조 제 1 호, 「법인세법 시행령」제 44 조 제 1 항, 제 4 항, 제 5 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점
- ✓ 나아가 청구법인 이사들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 13 조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첫 사례로 보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13 전 333, 2013.12.12., 같은 뜻임)

-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이사들이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이사들이 청구법인을 운영하였던 2009~2019 사업연도 기간 동안 매출액, 이익잉여금, 현금 및 예금 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우량 기업이었던 점,
- ✓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인수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20.1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수법인이 2020.11.23. 청구법인 이사들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9,947,053,691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쟁점퇴직금이 과다하여 청구법인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 및 이사 등이 교체·변경되더라도 청구법인 이사들의 특별한 공로를 부정하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 부동산 취득 당시 일부 호실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지 못할 경우 이 건 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명도소송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조심 2022 지 1035, 2023.04.06)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20.8.10. 000 토지 000 m² 및 건물 000 m²(이하 “제 1 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구 000 토지 000 m² 및 건물 000 m²(이하 “제 2 부동산”이라 하고, 제 1 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 16865 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 87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000 이 「신용협동조합법」 제 39 조 제 1 항 제 1 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청하여 취득세 000 원을 면제(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받았고, 취득세 등 합계 000 원을 신고·납부함

- 처분청은 2021.6.24.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였고 이 건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감면을 부인하고 2022.3.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000 원, 지방교육세 000 원, 농어촌특별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부과·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0.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 지특법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02.4.26. 선고 2000 두 1003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 ✓ 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들과의 명도소송 분쟁으로 인하여 일부인 2 개 호 실(제 1 부동산 104 호, 202 호)을 사용하지 못하여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일괄공사 필요 등의 사유로 이를 감면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해당하는 것임
 - ✓ 또한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일부 호실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지 못할 경우 이 건 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명도소송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다.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제재되고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기간 오류 등 신고상의 오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소 납부된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과소 납부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201 ○년 및 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고 201 ○년 및 201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되어 세금 부과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한 점, 「국세기본법」 제 47 조의 4 제 6 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 ○년 귀속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된 201 ○년 및 201 ○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일을 납부일로 하여 미납일수를 재계산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국세환급금은 과소 납부된 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 2023 부 0222, 2023.04.10)

■ 처분의 경위

- 청구인은 ○○○에서 AAA 라는 상호로 섬유제품(신발갑피)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외화(정기)예금에 대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하고, 세무조정 없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상한 금액 중 외화자산평가손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39 조 제 3 항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유보)한 후, 2022.8.8. 청구인에게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원(가산세 ○○○ 원 포함) 및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원(가산세 ○○○ 원 포함)을 경정·고지함(2018 년 및 2019 년 외화자산평가이익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018 년 귀속분 ○○○ 원, 2019 년 귀속분 ○○○ 원 환급결정하고 경정세액에 충당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일부인용)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따라 처분청이 계산하여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 ✓ 다만,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일수 계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8 년 및 2019 년 외화자산평가

손익 익금(손금)불산입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과는 별개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채 경과된 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기간 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조심 2011 중 1286, 2011.6.23., 같은 뜻임),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제재되고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기간 오류 등 신고상의 오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소 납부된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과소 납부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합리적인 점,

- ✓ 청구인은 외화자산평가손익에 대하여 2017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의 경정결정으로 청구인은 2017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고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되어 세금 부과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한 점, 「국세기본법」제 47 조의 4 제 6 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외화자산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산입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과소 납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다 납부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순차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일을 납부일로 하여 미납일수를 재계산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국세환급금은 과소 납부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라.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특법 § 30의 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서면-2022-법규법인-5222, 2023.04.12)

■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중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 사업연도부터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18 사업연도부터 '21 사업연도까지 4년 동안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 前공정(웨이퍼를 제조하고 회로를 새김)을 거친 반도체를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과정
- 질의법인은, 2019.5월 이후부터 2020.12.31.까지 반도체 테스트를 직접 수행하는 반도체 검사원과 검사장비의 보수·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장비기술직원(이하들을 합하여 '파견근로자')을 파견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의 형태로 제공받던 중,
- 파견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파견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2021.1.1. 파견법§6의 2(고용의무 규정)를 근거로, 해당 파견근로자를 질의법인(사용사업주)의 정규직으로 채용함

(질의내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특법§30의 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사용사업주인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 5조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2 (2020. 12. 29. 법률 제 17759 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마.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
임 (사전-2022-법규부가-1233, 2023.04.07)

■ 질의

(사실관계)

- 사단법인 ☆☆☆☆☆협회(이하 “신청법인”)는 비영리법인으로 ◎◎◎도·◇◇◇◇공사·(주)□□□□발전·(주)△△△△발전(이하 “협의체 구성원”, 신청법인을 포함하여 “협의체 구성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
-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이하 “WTIV”)
확보 방안’*과 관련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이하 “본 업무협약”)을 맺음

* WTIV 시장분석, WTIV 확보 방안 분석, WTIV 상세 제원 등

- 신청법인은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주식회사(이하 “쟁점용역 수행기관”)와 쟁점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용역의 유·무형적 성과물 및 권한은 협의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 쟁점용역에 대한 비용은 신청법인이 본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협의체 구성원으로부터 신청법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쟁점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하고,
- 신청법인은 지급한 쟁점용역 대금에 대하여 쟁점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질의내용)

- 업무협약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용역을 공급받고 협의체의 대표사가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용역 수행기관에 대금을 지급하고 협의체의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협의체의 대표사가 협의체의 구성원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신청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신청법인이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9 조제 15 항에 따라 협의회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회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